

# 학회소식

## 1. 정례학술발표회

### 1) 제113회 정례학술발표회

주관: 한국법사학회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일시: 2015년 6월 19일(금) 오후 1시 30분~6시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501호

〈프로그램〉

**대주제: 한국전통법제 연구방법론의 성찰**

등 록 (1:30 - 2:00)

개회식 (2:00 - 2:20)

개회사: 우병창 (숙명여대 법학연구소장, 교수)

회장 인사: 심희기 (한국법사학회 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 좌장: 한기중 (상지대)

**제1주제: 전통적 민사재판의 성격 (2:20-3:00)**

발표: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임상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제2주제: 파주 분수원 산송 전말에 관한 소고 (3:00-3:40)**

발표: 김백경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토론: 권재문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 휴 식 (3:40-4:00) -----

**제3주제: 「Wrongful Death」(2014)에 대한 서평 (4:00-4:30)**

발표: 김대홍 (서울대 법학박사)

**제4주제:** 제사 주재자의 결정 방법에 관하여 (3:00-3:40)

발표: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토론: 정궁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휴 식 (17:10-17:30) -----

종합토론: 한국전통법제 연구방법론의 성찰 (5:30 - 6:00)

폐회 및 만찬 (6:00- )

## 2) 제114회 정례학술발표회

주관: 한국법사학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일시: 2015년 10월 30일(금) 오후 1시 30분~5시 40분

장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법학관 3층 컨퍼런스홀)

〈프로그램〉

**대주제: 정종휴 교수 정년 기념: 민법학과 법사학의 행복한 만남**

개회 (1:30 - 2:00)

개회사: 심희기 (한국법사학회 회장, 연세대 법전문 교수)

환영사: 김원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전남대 법전문 교수)

**【제1부】 좌장: 김지수 (전남대 법전문 교수)**

**제1주제:** 요물계약 개념에 관한 고찰 (2:00-2:40)

발표: 정병호 (시립대 법전문 교수)

토론: 서울오 (이화여대 법전문 교수)

**제2주제:** 법사학의 환영(幻影) - 민법의 경험을 중심으로 - (2:40-3:20)

발표: 이진기 (성균관대 법전문 교수)

토론: 정구태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제2부】 좌장: 송오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제3주제:** ‘불완전이행’과 ‘부적절한 이행’의 용례에 관한 비교법사학적 고찰

(3:30-4:10)

발표: 성승현 (전남대 법전원 교수)

토론: 이준형 (한양대 법전원 교수)

**제4주제:** 메이지민법 부당이득법상의 개별규정의 형성 (4:10-4:50)

발표: 박세민 (경북대 법전원 교수)

토론: 김병선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

정종휴 교수와의 대담 (5:00 - 5:40)

폐회 (5:40-6:00)

**2. 미국 에모리 로스쿨 존 위티(John Witte Jr.) 교수 콜로키움:**

“From Gospel to Law: The Lutheran Reformation and its Impact of Legal Culture”

[법사학회,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연세대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공동 개최]

일시: 2015.5.8. (금) 오후 3-6시

장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 함재학 (연세대 법전원 교수)
- 식전행사
- 발제: From Gospel to Law: The Lutheran Reformation and its Impact of Legal Culture
- 지정토론: Eric Enlow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조나단 강(연세대 법전원), 장형철, 서을오(이화여대 법전원).
- 종합토론

### 3. 제7회 한국법사학회 瀛山 法史學 學術賞 수상자 수상소감

2014년 12월 20일(토) 오후 6시에 거행된 제7회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施賞式에서 우수학술상을 수상한 임상혁 숭실대학교 교수[수상논문: 고려의 법체계와 조선에 대한 영향(법사학연구 제48호, 2013. 10.)]와 신진학술상을 수상한 문현주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수상논문: 조선후기 한성부(漢城府)에서의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準戶口) 작성 과정에 관한 再考(고문서연구 42권, 2013. 2.)]의 수상 소감이다.

#### 1) 임상혁 교수 수상소감

제가 이런 영광을 안겨 주신 데 대하여 서민 심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심사위원님들과 법사학회·고문서학회의 회원님들께,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영산 박병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상이기에 얼떨떨하기 그지없고, 제 주제에 이런 상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부끄러움마저 느껴집니다. 저는 이 논문에서 그동안 고려 법제에 대한 연구가 고려율에 치우쳐 온 경향을 비판하면서, 제(制), 판(判), 교(敎)와 같은 왕법들의 역할에 주목하여 그 성격과 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마침내 이들이 고려의 법체계에서 핵심을 이루었다는 것과 조선에서의 질적인 변화에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밝혀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선생님께서 선행 연구로써 지적하신 바 있으며, 제 작업은 그것을 확인하는 정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산 법사학 학술상을 과분하게 안겨 주셨기에, 저는 이것이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라는 격려이자 흐트러져가는 마음을 바로잡으라는 질책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요즈음은 논문의 작성이라는 것이 산술적으로 요구받은 물량을 채우는 작업이 되어버린 시대이다 보니, 연구 저술들이 사회적으로 하찮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학자들도 또한 그래봤자 논문 한 편일 뿐 하며 자조하게 됩니다. 더욱이 인지도가 낮은 학문 영역에서는 그 허탈한 마음이 쉬이 체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겨진 학술 논문들은 후학들에게 있어 분석하기도

하고, 계승하거나 넘어서야 할 대상이 되면서 세상을 일깨워 온 것도 사실입니다. 영산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법사학이라는 영역의 중요성을 절감하시고 선구적으로 개척해 오시면서, 이런 연구에서의 외로움 또한 일찍부터 몸소 겪어오셨습니다. 그리하여 후학들이 외진 학문을 한다는 상념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하셨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시류에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을 다잡고 연구 자세를 바로 하는 전환점을 이 수상으로써 삼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 2) 문헌주 박사 수상소감

고문헌관리학 전공자로서 법사학회에서 주시는 신진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 학술상을 만드신 필자의 스승 영산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문헌관리학을 전공하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학문적 소양이 법학이라는 것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에 대한 실천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자 하는 다짐을 해보는 바이다. 수상의 영광됨, 그 한편으로는 훌륭한 연구 업적을 쌓은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이 매우 크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많은 필자에 대한 격려라 생각하고 앞으로의 연구에 더욱 천착할 것을 다짐해 본다.

필자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는 호구단자와 준호구이다. 대학원에 입학하여 논문의 연구 주제를 고심하던 당시, 고문헌관리학이라는 전공이 개설된 이래 개별 고문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전공자들에 의해 논문으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까지 호구문서를 연구 주제로 택한 전공자는 없었으며, 필자 또한 그것이 일종문서로서의 연구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견하지 못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고문서학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출판된 개론서인 최승희 교수의 『한국고문서연구』에도 해당 문서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기술되어 있으며, 전공 서적이 아닌 각종 자료집, 도록, 관련 분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 고문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대강은 파악하고 있을 만큼, 호구문서를 통해 논문을 쓰고 나아가 조선시

대 사회사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한국고문서연구』에 의하면 호구단자는 ‘호구대장을 改修하기 위해 각 호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제출하는 것’으로, ‘호주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里任, 面任의 검사를 거쳐 州郡에 보내지고, 州郡에서는 舊臺帳 또는 관계 서류를 대조하여 오착 여부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還付하여 各家에 보관케 하고, 1부는 帳籍을 개수하는 데 자료로 이용한 것’이며, 준호구는 ‘민가에서 관으로부터 原籍(帳籍)에 준하여 騰給 받는 호적등본’으로, ‘소송시의 첨부자료로서, 또는 노비 소유의 자료로서, 혹은 가문유지의 자료로서, 관으로부터 원적에 준해서 등급 받는 것’이다.

필자는 현재까지의 정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호구단자와 준호구, 두 문서에 대한 더욱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호구문서는 고문서 가운데서도 현존 문서의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 문서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여 각각의 문서 내용을 엑셀 파일에 입력하여 시기별로 지역별로 여러 사항을 살펴본 결과, 분석 기준인 시기별·지역별로 문서상에 변화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18세기 후반을 지나면서는 한성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준호구를 주호측에서 작성한다는 변화를 거쳐, 호구단자와 준호구라는 두 종류의 문서가 1장으로 ‘단일화’ 되는 현상이 생겼다. 각 주호가 호구단자의 형식이든 준호구의 형식이든 1장의 문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호적을 등서한 다음 돌려주었다. 한성부의 경우 단일화 이후의 것으로 준호구 형식의 문서로만 제출하였다. 또한 각 군현별로 혹은 같은 군현 내에서도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호구문서와 호적대장의 작성 과정을 보면 호적 제도의 구체적 운용 양상이 시기에 따라 전국 단위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 그리고 호구자료 작성 과정상의 소략화가 나타났던 것은 장적의 성격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크다. 조선후기에 호구 총액제를 채택하여 공동납이 운영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군현 단위에서의 구체적인 호정 운용까지 세세하게 통제하

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자율적 운용이 자리잡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호구자료를 통한 연구는 주로 호적대장을 통한 인구사적인 측면과 사회신분사적인 측면에서 시도되었다. 호구단자나 준호구의 작성 과정은 장적의 작성과 분리해서 논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숙제로 남는 이 시점에서 필자는 호구단자와 준호구 및 호적대장 작성을 연동해서 연구할 수 있는 단초를 계속해서 찾아낼 계획이다.

필자가 20대 후반부터 호구문서를 가지고 소논문부터 쓰기 시작하여, 석사논문과 박사논문까지 최종적으로 마친 것이 2013년이다. 이후로는 학위논문 제출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기에 잠깐 숨을 고르며 보통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과 출산 등을 경험해본다는 핑계로 휴식기를 가지고 있었던 참이다. 그 휴식이 너무 길어지고 있음이 분명하여 자괴감까지도 느껴지던 상황에서 이 영산학술상은 필자에게 학문적 촉매제,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학회장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이 자리를 빌려 논문의 지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애정과 믿음을 아끼지 않으시는 영산 선생님,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잡아 일으켜 주신 전경목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법사학회에서 신진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오늘의 수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하며 소감을 가름하는 바이다.

#### 4. 회원동정

1) 학회 전임 회장 서울대학교 최병조 교수가 제11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양삼승 영산대학교 석좌교수)은 한국 법사학회 전임 회장 최병조 교수를 제11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지난 2015년 10월 28일 서울 롯데호텔(중구 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에서 시상하였다.

영산법률문화재단측은 “로마법과 서양법제사 연구에 매진하며 세계적으

로 인정받는 훌륭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연구 성과를 우리 민법에 적용, 법사학과 법문화 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높이 샀으며, 국내에서 제대로 배우기 힘든 로마법 연구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법학연구의 지평을 넓혔다”고 수상자 선정 배경을 밝혔다.

법사학회로서는 2007년 박병호 전임 회장이 이 상을 수상한 데 이어 금년에 다시 한 번 최병조 교수가 수상하게 되었기에 더욱 큰 경사를 맞이하였다.

2) 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최병조 교수는 11월 5일-6일 거행된 독일 괴팅겐 대학교 볼프강 젤러트(Wolfgang Sellert 교수(독일법제사) 팔순 기념행사 및 기념국제학술발표회(괴팅겐 학술원 주최) 참석하였다. 특히 기념학술발표회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젤러트 교수가 주도한 독일 제국국정회의(Reichshofrat: 1498, 1518, 1527~1806) 재판기록의 목록화 작업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독일법제사에서 그림에 표현된 재판의 모습에 대한 발표들이었다. 아시아에서는 현재 괴팅겐대학교에서 독일법제사 방문학자로 있는 일본인 소장 학자(교토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준교수 사토 단)와 최병조 교수가 참석하였고 중국에서는 참석자가 없었다.

3) 학회 회원 Marie Seong-Hak Kim(김성학) 교수가 신간을 발행하였다. 한국법 역사에 대한 논문들을 모은 책으로 제목과 정보는 다음과 같다.

Kim, Marie Seong-Hak, ed. *The Spirit of Korean Law: Korean Legal History in Context*. Leiden: Brill Nijhoff, 2016.

ISBN 13: 9789004290778

E-ISBN: 9789004306011

<http://www.brill.com/products/book/spirit-korean-law>

책의 내용은, 조선시대로부터 식민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법의 역사를 법전편찬, 법이론과 실무, 법률학의 시각에서 10개의 논문을 통해 연

구한 책이다.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기존의, 또한 신진 학자들의 최신의 연구 성과를 모아 김성학 교수가 편집하였다. 이 책은 특히 외래법이 한국법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아시아 및 세계의 법에 있어서의 한국법의 위치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비교사학의 시각에서 각 시대, 주제별로 고찰하였다. 한국 법에 대한 외국 및 한국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의 최근의 학술 연구를 소개하고 평가한 것으로, 한국법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널리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김성학 교수는 책에 대한 질문 및 제의 사항이 있는 경우, 회원들이 언제든지 [mskim@stcloudstate.edu](mailto:mskim@stcloudstate.edu)로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Preface vii

List of Contributors viii

1 Introduction: Searching for the Spirit of Korean Law 1

Marie Seong-Hak Kim

Part 1 Legal Codes and Institutions of the Chosŏn Dynasty

2 The Chosŏn Law Codes in an East Asian Perspective 19

Jerome Bourgon and Pierre-Emmanuel Roux

3 Circulation of Law and Jurisprudence in Korea and China: Homicide and the Notion of Requital for Life 52

Frederic Constant

4 Confucian Ideology and Legal Developments in Chosŏn Korea:

A Methodological Essay 83

Anders Karlsson

Part 2 Law and the Legal System under Colonial Rule

- 5 The Rise of Korean Constitutional Thought (1875 - 1945): An East Asian Perspective 107

Noriko Kokubun

- 6 Can There Be Good Colonial Law? Korean Law and Jurisprudence under Japanese Rule Revisited 129

Marie Seong-Hak Kim

- 7 Legality or Legitimacy: Revisiting Debates on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ies 155

Samuel Guex

Part 3 Law, Court, and Legal Reform in Modern Korea

- 8 The Making of the Constitution and the Civil Code in Postliberation Korea 177

Joon-Young Moon

- 9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the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to Democratic Rule 202

Justine Guichard

- 10 Korea and the Reform of the Northeast Asian Legal Complex 233

Tom Ginsburg

Index 261

## 5. 운영위원회

회장	심희기(연세대)
부회장	한상돈(이주대, 편집위원장), 김창록(경북대)
감사	윤대성(창원대 명예교수), 이은영(한국외국어대)
총무	서울오(이화여대)
연구	정병호(서울시립대), 임상혁(숭실대)
정보	조지만(이주대)
편집	문준영(부산대), 성중모(서울시립대)
섭외	이종길(동아대)
편집위원	이재룡(충북대), 이영록(조선대), 임대회(경북대), 임상혁(숭실대), 문준영(부산대), 조지만(이주대), Marie Seong-Hak Kim(St. Cloud State Univ.), 성중모(서울시립대)

## 6. 학회비

비정규직 연구자(대학원생 포함): 3만원

정규직: 5만원

기관: 7만원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424-850414 (예금주: 서울오)